

199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794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795
가. 예산(안) 총규모 .....	795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796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799
3. 검토의견 .....	803

# '9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 예산(안) 편성방침과 기준

### 기 본 방 침

- 수해복구 사업비 적기 확보
- 중앙지원 사업비 정리

### 편 성 기 준

#### [ 세입예산 ]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 조정
- 중앙기금 및 기타 잡수입 계상
-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지방채 승인 신청액 계상

#### [ 세출예산 ]

- 인건비 소요액 판단 결과 부족액 계상
- 명절 휴가비 증액 지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 계상
- 중앙지원 사업분에 대한 도비 부담액 계상

## 2.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

### 가.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74,481,403	100	670,890,492	100	103,590,911	15.4
일반회계	616,510,031	79.6	540,248,701	80.5	76,261,330	14.1
특별회계	157,971,372	20.4	130,641,791	19.5	27,329,581	20.9

'9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744억 8,140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708억 9,049만 2천원보다 15.4%인 1,035억 9,091만 1천원이 증액편성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1%인 762억 6,133만원이 증가한 6,165억 1,00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인 273억 2,958만 1천원이 증액된 1,579억 7,137만 2천원의 규모임.

나. 세입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74,481,403	100	670,890,492	100	103,590,911	15.4
일 반 회 계	616,510,031	79.6	540,248,701	80.5	76,261,330	14.1
· 지방세	136,005,000	22.1	136,005,000	25.2	-	-
· 세외수입	51,667,581	8.4	51,660,634	9.6	6,947	0.0
- 경상적 세외수입	10,661,751	1.7	10,661,751	2.0	-	-
- 임시적 세외수입	41,005,830	6.7	40,998,883	7.6	6,947	0.0
· 지방교부세	160,295,882	26.0	132,209,200	24.5	28,086,682	21.2
· 지방양여금	46,943,067	7.6	46,943,067	8.7	-	-
· 보조금	145,856,271	23.7	111,116,919	20.6	34,739,352	31.3
· 지방재원	75,742,230	12.3	62,313,881	11.5	13,428,349	21.5
특 별 회 계	157,971,372	20.4	130,641,791	19.5	27,329,581	20.9
· 공기업특별회계	136,319,410	17.6	108,989,829	16.2	27,329,581	25.1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10.9	56,253,914	8.4	27,820,608	49.5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2,244,888	6.7	52,735,915	7.9	△ 491,027	△ 0.9
· 기타특별회계	21,651,962	2.8	21,651,962	3.2	-	-
- 의료보호기금	16,401,051	2.1	16,401,051	2.4	-	-
- 대청호특별 대책지역환경 기초운영관리	1,910,526	0.2	1,910,526	0.3	-	-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340,385	0.4	3,340,385	0.5	-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인 762억 6,133만원이 증가한 6,165억 1,003만 1천원  
으로서

-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694만 7천원이며,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82.4%인 628억 2,603만 4천원임.
- 지정재원은 17.6%인 134억 2,834만 9천원임.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516억 6,063만 4천원보다 694만 7천원이 증가된  
516억 6,758만 1천원으로서,

- 잡수입 (도민교육원 농기계 간이 격납고 재해복구비) 694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의존수입인 중앙지원재원으로는 기정예산액 2,902억 6,918만 6천원보다  
21.6%인 628억 2,603만 4천원이 증가된 3,530억 9,522만원으로서

- 지방교부세 280억 8,668만 2천원
- 국고보조금 347억 3,935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 623억 1,388만 1천원보다 21.5%인 134억 2,834만 9천원이  
증가된 757억 4,223만원으로서

- 지방채 ('95 수해복구사업) 130억원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9만 6천원
- 기금수입 3억 720만원
- 부담금 ('95 수해복구사업 시군 부담금) 1억 1,905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9%인 273억 2,958만 1천원이 증가한 1,579억 7,137만 2천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가 86.3%, 기타특별회계가 13.7%임.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 예금이자 수입 8,906만 5천원
- 가경3지구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2억 5,902만 7천원
- 가경2지구 학교용지 선수금 △ 108억 3,101만 9천원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등

4억 9,102만 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94 용자금 포기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17억 8,224만 1천원
- 예금이자 수입증가 5억원
- 시효소멸 채무 면제 수입 39만 2천원
- 지방채 매출 ('95 지역개발공채) 50억원
- 이월금 241억 245만 7천원등

278억 2,060만 8천원이 증액계상됨.

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74,481,403	100	670,890,492	100	103,590,911	15.4
일 반 회 계	616,510,031	79.6	540,248,701	80.5	76,261,330	14.1
· 인 건 비	43,069,140	7.0	42,853,100	7.9	216,040	0.5
· 물 건 비	32,691,974	5.3	31,934,381	5.9	757,593	2.4
· 이 전 경 비	122,084,250	19.8	121,526,276	22.5	557,974	0.5
· 자 본 지 출	393,744,911	63.9	319,142,278	59.1	74,602,633	23.4
· 용 자 및 출 자	7,678,000	1.2	7,678,000	1.4	-	-
· 보 전 재 원	1,815,143	0.3	1,815,143	0.3	-	-
· 내 부 거 래	6,463,401	1.0	6,398,284	1.2	65,107	1.0
· 예비비 및 기타	8,963,212	1.5	8,901,229	1.6	61,983	0.7
특 별 회 계	157,971,372	20.4	130,641,791	19.5	27,329,581	20.9
· 지역개발기금	84,074,522	10.9	56,253,914	8.4	27,820,608	49.5
· 공영개발사업	52,244,888	6.7	52,735,915	7.9	△ 491,027	△0.9
· 농어촌소득 개 발 기 금	3,340,385	0.4	3,340,385	0.5	-	-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청호특별대책 지역	1,910,526	0.2	1,910,526	0.3	-	-
· 의료보호기금	16,401,051	2.1	16,401,051	2.4	-	-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액 5,402억 4,870만 1천원보다 14.1%인 762억 6,133만원이 증액된 6,165억 1,003만 1천원 규모임.

□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의 0.5%인 2억 1,60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방공무원 증원(107명), 가족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부족분임.
-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4%인 7억 5,75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정책보좌관 직책급 (3→11명), 효도휴가비 증액 지급분, 소방본부 인원증(107명), '96 농촌주택시범마을 기본계획 수립등에 계상된 것임.
-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0.5%인 5억 5,797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이재민 구호비,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지원등이 증액된 것임.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3.4%인 746억 263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96 수해복구사업, 농촌진흥원 부지 정지비,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매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등이 증감된데 기인됨.
- 용자 및 출자는 증감없음.
- 보전재원은 증감없음.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0%인 6,510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은 수해복구사업비 교육청전출에 따른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0.7%인 6,198만 3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 의회비	1,374만 5천원
- 일반행정비	5억 3,482만 9천원
- 사회복지비	51억 4,457만 9천원
- 산업경제비	16억 9,074만 8천원
- 지역개발비	635억 2,907만 3천원
- 문화 및 체육비	38억 2,440만 2천원
- 민방위비	14억 6,197만 1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	6,198만 3천원

이며,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인건비 및 기준경비인 법정 경비로는

- 소방본부 증원등	7억 9,000만원
- 명절휴가비 부족분	2억 3,000만원이며

둘째, 의무적 경비로는

○ 비도지정사업에

- 기금사업	4억 1,400만원
- 도민교육원 농기계격납고 수해복구비	700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이며

○ 지방교부세 사업에

- 지정교부세 사업 (2건)	3억
- 증액교부금 사업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구획 재정리, '95 수해복구비)	277억 8,700만원

○ 국고보조사업에

- 육천공업전문대학건립비의 16건에	104억 7,800만원
- 수해복구사업 ( 국비 24, 도비 13,284, 시군부담 119백만원)	381억 7,800만원이며

새책, 경정재원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입비와 의회사무처 난방기구구입등 22억 300만원을  
조정하여 법정 경비 및 예비비등에 계상

□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 공채 선급이자 9,400만원
- 공채추가 인채분 2,000만원
- 상하수도사업등 8개 사업 193억 3,000만원
- 예비비 83억 8,000만원을

계상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지방채 및 사모공채 차입금 상환 계획조정 30억 1,000만원
- 효도휴가비등 법정경비 3,000만원
- 가경 3지구 문화재 발굴비등 3건 1억 7,000만원
- 가경 2지구 반환준비금 1억 9,000만원
- 예비비 2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음

### 3. 검토의견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744억 8,140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708만 9,049만 2천원보다 15.4%인 1,035억 9,09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762억 6,133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3억 2,958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앙기금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지방채 승인 신청액을 계상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여 지방재정 수용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사료되나,

#### 첫째, 세입에 대하여

매년 결산 검사시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초과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계상되지 않아 기존 사업비에서 감하여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지방채 13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경정사업비에 대하여

온달지구 관광이주단지 조성의 9건 35억 5,925만 2천원의 사업이 변경된 것은 예산을 심의의결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이를 억제하여야 하나 금회 추경에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이 요구됨.

당 초	변 경
· 온달지구 관광이주단지 조성 150,000	· 온달지구관광지개발 150,000
· 관광기반시설확충 100,000	·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재배확대 220,000
· 충주문화유적정비 120,000	· 인삼가공공장 진입로 확·포장 50,000
· 인삼가공공장기본계획및설계비 50,000	·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230,000
·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지매입비 230,000	· 고명역 진입로 개설 100,000
· 제천여중~금융APT간도로개설 100,000	

당 초		변 경	
· 재천농고 ~ 교동삼거리간 도로확포장	260,000	· 청천 7~8통 소방도로개설	260,000
· 옥천읍 북부 우회도륙 포장	60,000	· 주읍도시계획 도로포장	60,000
· 산사태위협마을 이전	50,000	· '96 농촌주택 시범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
·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매입비	2,439,252	·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대체농지조성비	93,556
		· 농촌진흥원 이전 부지조성 공사	2,150,000
		· 농촌진흥원 이전공사 전면책임감리비	190,406
		· 농촌진흥원 이전부지 조성공사 부대비	5,290
계	10건 3,559,252	계	12건 3,559,252

세째, 체육회관 건립비에 대하여

체육회관은 93년 1월 민간주도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비 27억 3,200만원 중 도비가 93년 10억, 95년 3억을 지원하여 '95년 8월 4일 준공식을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금회에 계상된 2억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네째, 전국체전 강화 훈련비 및 파견에 대하여

전국체전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정예산에 추가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금회에 5억 36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다섯째,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94 결산검사시 불용액 261억 9,100만원이 발생하여 지적되었는바 이월금 241억 200만원은 1회 추경시 반영하여 융자금 추가소요적정사업에 채용자 지원되도록 했어야하나 금회에 반영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